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30.

발의자 : 정동만 · 김도읍 · 김승수

김정재 · 박성민 · 안병길

유경준 · 이주환 · 이채익

전봉민 · 황보승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 · 레저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비행수요가 많은 도심 상당수의 지역이 주변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, 공항, 군부대 등의 보안, 테러방지 등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음. 이로 인해, 드론을 활용한 취미 · 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,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.

이에,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 ·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한편,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1조의

2 신설).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·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(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드론공원의 위치·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.

1. 「항공안전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)
2. 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시·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·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·변경·해제 요건이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드론공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드론공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드론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1조의2(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)</u></p> <p><u>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·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(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·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드론공원의 위치·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><u>③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</u></p>

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.

1. 「항공안전법」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)

2. 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시·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

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등에게 필
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할
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
청받은 시·도지사등은 정당한 사
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
등은 드론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
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
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
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·변경
· 해제 요건이나 절차 및 운영 등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